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6. 10 (금)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회부일자 : 2005. 6. 20(월)
- 상정일자 : 2005. 6. 22(화) 제12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6.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협의체의 운영 및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을 규정
- 군수가 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 보조, 사무공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으로 주 내용은
 -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 등이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의 자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운영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사회내 불우계층에게 보다 나은 복지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며
-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 안 제3조에 당연직위원에 군의회 의원1명을 포함하였고
 - 안 제3조 제3항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 선출과 관련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한다"로 강제하였으며
 - 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를 "보조할 수 있으며"로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음
 - 다만 지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계류되었던 사항 중 "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받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검토 요구에 대하여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구성체로서 운영지원을 위해 기부금품들을 기탁받아 협의체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대표협의체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발생할 시에 대표 협의체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기탁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음.

- 기타 조례안의 자구, 띄어쓰기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부 끝.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출년월일 : 2005. 6.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나.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포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며, 각 실무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재적 위원 1/3이상 요구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마.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입법예고('05.2.2 ~ 3.10)결과 의견제출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 라.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환경복지과장·보건의료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군의회 의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환경복지과 사회복지분야 담당과 보건의료원 보건 및 의료분야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